

# 産業財産權 制度 정복(6)

이 글은 特許廳이 발간, 배포한 「特許란 무엇인가」, 「意匠이란 무엇인가」, 「商標란 무엇인가」라는 3권의 책자에 실린 内容이다.

産業財産權界 초보자에게 産業財産權制度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끝까지 연재코자 한다.

〈編輯者 註〉

## 特許

### 1. 特許出願에서 登錄까지의 費用

특허출원시부터 특허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본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출원료(特許出願料) : 15,000원(출원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이 20면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면마다 500원씩 가산된다)
- 심사청구료(審査請求料) : 56,000원(특허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 가산된다)
- 출원공고료(出願公告料) : 23,000원(공고면수가 3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면마다 13,000원씩 가산된다)
- 우선권주장신청료(優先權主張申請料) : 15,000원(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하나의 우선권주장마다 10,000원씩 가산된다)
- 특허료(特許料)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 : 매년 15,000원(특허청구범위의 항이 5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 가산된다)

### 2. 出願書에 기재할 수 있는 發明의 범위

심사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특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하나의 발명(특허청구범위에 독립청구항(獨立請求項)을 하나만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만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개발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관련 기술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발명자의 입장에서 관련기술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1발명에 대하여는 1특허출원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발명이 1군(群)의 발명(특허청구범위의 독립청구항을 2이상 기재할 수 있다)개념에 해당될 때에는 이들도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함께 기재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자의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1군의 발명이란 물건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관한 1독립항(獨立項)과 그 물건을 생산·사용·취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각각 1독립항을 기재하는 경우, 방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과 그 방법의 실시예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에 관한 1독립항을 함께 기재한 발명을 말한다.

### 3. 出願후의 補正

특허출원후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정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의 보정에는 특허출원의 형식이나 절차가 법령에 정하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행하는 절차보정(節次補正)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실체보정(實體補正)이 있다.

절차보정은 출원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보정지시를 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출원은 무효처분(無效處分)을 받게 된다.

실체보정은 출원인 스스로 판단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정기간내에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보정이다.

통상 보정이라 할 때에는 실체보정을 말한다.

보정은 이와 같이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 일정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사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제도하에서 출원인과 일반공중과의 이해를 상호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4. 分割出願

하나의 출원서에 2이상의 복수발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분할출원(分割出願)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이란 이미 한 특허출원서에 2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각각 개별발명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에서는 1군의 발명 개념을 도입하여 1특허출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그 범위를 넘는 발명이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하여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출원은 거절사정을 받게 되므로 출원인은 1군의 범위내의 발명별로 분할출원을 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은 출원일이 분할의 모체가 된 최초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溯及)되기 때문에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명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다. 분할출원은 기존의 출원내용에서 하나의 분리되는 새로운 출원이므로 특허출원료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분할

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명세서(出願明細書)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만 가능하다. 무분별한 분할출원은 심사처리의 지연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5. 變更出願

출원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변경출원(變更出願)을 하여야 한다.

물품에 관하여 창작을 한 경우,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할 것인지는 출원인이 결정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출원을 서두른다거나 제도에 대한 오해나 대상물에 대하여 판단을 잘못하여 출원의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다. 변경출원이란, 이와 같이 동일 대상에 대하여 출원의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 (특허출원으로 할 것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으로 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대상으로 그 출원의 형식(形式)을 변경하는 절차이다.

분할출원과 같이 변경출원이 행해지면 변경출원에 대한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또한 변경출원이 되면 그 모체가 된 원출원은 취하(取下)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拒絕査定)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이들 출원일부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6. 優先權制度

우선권제도(優先權制度)는 파리조약(條約)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한 제도이다. 1국에 있어서 특허권의 발생 또는 효력은 각국 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는 특허독립(特許獨立)의 원칙에 따라 동일발명에 대하여 다수 국가

에서 특허권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국가마다 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나 언어, 제도 등의 차이 등으로 발명자는 다수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각국가마다 출원하는 경우의 시간적 간격으로부터 생기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우선권제도이며, 외국에의 출원에 대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파리조약 동맹국(同盟國)중의 1국에 출원(제1국출원이라 한다)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우선기간(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제1국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의 효과는 우리나라에 한 출원은 제1국 출원일로부터 우리나라에 한 출원일 까지의 사이에 행해진 다른 출원에 의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 한다. 즉 신규성(新規性)등의 판단시점이 제1국 출원일 까지 소급하여 적용을 받게 된다.

### 7. 改良出願

먼저한 발명을 개량하여 출원하려 하는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우선권제도(國內優先權制度)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취지는 같다. 국내우선권 제도란 우리나라에 이미 한 자기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선출원이라 한다)의 발명 또는 고안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발명을 하여 출원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포괄적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중 선출원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심사등의 기준일(基準日)을 선출원일로 보아주는 제도이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통상 이 제도를 국내우선권제도와 부른다. 따라서 기본적인 발명 또는 고안의 출원후에 당해발명과 후의 개량발명(改良發明)과를 포괄적인 발명으로 모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단계적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특허권으로

서 충실히 보호 받을 수 있다.

우선권이 발생하는 부분은 선출원의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기초가 되며, 우선권을 발생시킨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 본다.

## 意 匠

### 1. 外國에서 알려진 意匠의 國內出願

우리나라 의장법은 의장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된 경우에는 신규성(新規性)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있지 않더라도 의장등록출원전에 외국에서 공지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 2. 要旨變更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要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정(등록사정 또는 거절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보정에 의한 요지변경(要旨變更)이란, 보정내용이 물품의 명칭, 의장의 설명,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한 의장과 동일성(同一性)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3. 意匠의 우수성과 등록 여부

특허청에서는 의장의 우수성 여부 또는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며, 또한 의장등록을 받을 의장이라고해서 반드시 우수하거나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장등록 출원후 심사(審査)가 끝날 때까지는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다.

## 商 標

1. 存續期間滿了후의 재등록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재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출원인이 과거 상표권자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출원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게 된다.

즉, 출원인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당시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시기에 제한 없이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타인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상표권은 비록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1년정도는 수요자의 인상에 그것이 기억될 수 있으므로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전부터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문제는 없으므로 타인도 시기적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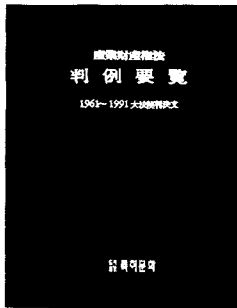
2. 出願中인 商標의 양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양도는 전부양도 또는 그 지정상품중의 일부상품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절차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에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와 인감증명서 1통을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와 달리 신문 광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정 상품의 일부 양도의 경우 양도하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 상품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신간안내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



도서출판 특허문화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인 「産業財産權法 判例要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特許上告事件은 물론이고 民·刑事 등의 판례 전문·핵심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法律 條文別, 內容의 性格別, 判決宣告日字 순으로 편집되어 있어 이용하기 쉽고, 나날이 늘어나는 知的財産權 紛爭에 도움이 되는 실무서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엮어져 있다. (도서출판 특허문화(565-0205)(4×6배판, 470면, 20,000원)

신간안내

소련 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규격: A5신·318면 가격: 5,000원

新商標法解説

江口俊夫 著 규격: A5신·352면  
鄭完燮 譯 가격: 10,000원

판매: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전화 (02) 551-5571~2)